

Ⅲ. 주요 경제 현안

1. 슈퍼 301조 부활의 의미와 대응 과제

□ 주요 내용 및 의미

슈퍼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포괄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방적 통상 법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

- (슈퍼 301조의 주요 내용) 무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자체를 제재
 - 美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26일,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역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으로 지정하고, 쌍무 협상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고 발표¹⁾
 - 기존의 통상법 301조는 업계 청원이나 USTR 발의에 의해 특정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조항인데 비해, 슈퍼 301조는 USTR의 발의하에 특정 국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포괄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한시법으로 2001년까지 적용
 - 슈퍼 301조 발동 절차를 살펴보면, ▷USTR이 3월말까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 ▷1개월 이내에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시 미국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PFCP를 지정 ▷90일 동안 양자 협의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등의 개선을 요구 ▷협이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슈퍼 301조를 통한 정식 조사가 12~18개월 동안 실시²⁾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 실행
 - 한편,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인 94년에 부활한 슈퍼 301조가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97년 10월의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접근이 유일함

1) 외국의 차별적인 정부조달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Title VII'도 부활되었는데 98년 3월 NTE 발표 후 슈퍼 301조와 함께 정식 시행될 예정. 한편, 슈퍼 301조는 88년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한시법으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94년 부활되어 적용된 이후 95년 9월에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97년에 효력이 만료

2) 6개월은 차별적 정부조달관행 조사, 12개월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조사에 소요

- (의미) 보호무역 기조속에서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

- 미국 경제가 90년대 초 불황 이후 8년 연속 경기확장을 이뤄왔으나 99년에는 성장세가 2%내외로 둔화되는 데다가, 경상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치인 GDP의 3.5%에 달할 전망이어서 미국내에 보호무역주의 압력³⁾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데일리(W. Daley) 美 상무장관은 지난 1월 의회 연설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미국의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붕괴 압력이 고조될 것이며, 그 결과 무역 전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 수입재 폭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수입재에 대한 덤핑 마진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을 요구⁴⁾
- 더구나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DRAM 분쟁에서 패배하는 등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철강재 수입이나 바나나 무역 분쟁⁵⁾ 등으로 일본, EU 등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WTO 등 다자간 협상 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 한편,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슈퍼 301조에 따른 일방적 제재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도 훼손시키는 것임을 들어 강력하게 비난

□ 영향

농산물 시장 개방, 철강이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덤핑 수출 등 주요 통상 현안의 해결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전망

-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미국은 우선협상대상국을 89년 2개국(일본, 인도), 97년 1개국(한국) 등 제한적으로

3) Michael P. Leidy(“Macroeconomic Conditions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MF Staff Papers, Mar. 97)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이나 GDP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율이 1% 증가하거나 설비 가동률이 1% 하락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각각 49건, 21건, 16건 증가(철강 수출 자율규제협약 종료에 따른 92년의 제소 증가분을 제외한 모형을 이용한 결과)

4) 12일 美 상무부가 수입 철강재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치를 밝히기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8일 美 경제전략연구소(ESI)는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반덤핑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Leveling the Playing Field: Antidumping and the U.S. Steel Industry”). 보고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0년대에 반덤핑 규제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장기적 손실은 소비자 후생 증가분을 초과, 특히 97년의 경우 생산 축소, 임금 하락 등에 따른 純손실 규모는 7,000만~3억 4,000만 달러(덤핑 수준에 따라 결정).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현재의 불공정 무역 및 산업 정책으로부터 미국 철강 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세계 철강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덤핑 제재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5) EU가 과거 식민지로부터 수입된 바나나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것에 대해 미국이 불공정 행위로 WTO에 제소, 97년 WTO가 EU에 개선을 명령했으나 EU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분쟁이 지속

로 지정해왔으며, 금번 미국이 슈퍼 301조의 적용 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는 나라는 무역적자 폭이 큰 일본과 중국, 바나나 분쟁 중인 EU 정도임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8년 23억 달러(미국측 통계로는 8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일본, 중국에 비해 작은 상태이며 한국과는 커다란 통상 현안이 없음
- 그렇지만 미국 업계가 작년 12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한국 관련 건수가 20건에 달하여(농산물·식품 관련 12건, 지적 재산권 관련 2건, 철강 보조금 문제, 수입의약품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목재 제품, 오토바이 및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문제 등), USTR이 3월말 美 의회에 제출할 NTE에 몇몇 업종은 포함될 가능성 있음

- 한국은 슈퍼 301조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슈퍼 301조의 부활을 통해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 것임. 한국을 직접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상 현안의 해결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개방, 특히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및 제도 개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자동차 세제 문제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을 것이며, 특히 철강은 미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한국 제품의 덤핑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피셔(R. Fisher) USTR 부대표는 2월 초 訪韓하여 철강 수입 문제, 수입의약품 차별 대우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新공항건설과 관련해서는 WTO에의 회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진행중인 한미간 투자협정(BIT) 협상에서도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폐지, 자본 시장의 세이프 가드 불인정 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대응 과제

WTO 등 다자간 협상 체제를 통해 통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미국의 공세에 EU나 일본 등과 공동 대응.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세적인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비하여 반덤핑,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 WTO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 통상 문제를 WTO, APEC 등 다자간 협상 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함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 있음
- 기업, 정부는 WTO규정에 어긋나는 제도와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 EU는 1월말 슈퍼 301조가 WTO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일본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들 국가와 WTO 차원에서 슈퍼 301조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오도록 협력함
- 만약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즉각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임

- 통상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

- 당장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 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 개선하고 가능하다면 미국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 일본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美日간 철강 부문 무역 마찰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업의 입장에서라도 향후 공세적인 미국의 무역 정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반덤핑,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김 용 복 ybkim@hri.co.kr ☎724-4032, 박 병 칠 bcpark@hri.co.kr ☎724-4048)